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제45조의3제2항 관련)

어업의 종류		금지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1. 근 해 어 업	가. 동해구외끌이중형 저인망어업	조업금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북 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 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 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 북의 해역		
			연중	주1)의 해역		
		서남해구외끌이중 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	연중	주1)의 해역	
	서남해구쌍끌이중 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	연중	주1)의 해역		
	나. 대형선망어업	불빛 이용 금지	연중	연중	1. 주2)의 해역 2. 제주특별자치도 추자 도와 전라남도 거문도 의 주위 7천4백미터 이 내의 해역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 지
			멸치포획금지	연중	연중	1. 주4)의 해역 2. 주5)의 해역 3.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업금지	연중	연중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주15)를 제 외한 제주특별자치도 본 도로부터 2천7백미터 외 측해역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빛을 이 용하지 않고 전갱이를 포 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와 같은 해역에서 9 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

			<p>지 않고 고등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도 3 참조).</p> <p>2. 주15)의 해역</p> <p>3. 주16)의 해역</p>
소형선망어업	불빛 이용 금지	연중	<p>1. 주2)의 해역</p> <p>2.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p>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3)의 해역
	멸치포획금지	연중	<p>1. 주4)의 해역</p> <p>2. 주5)의 해역</p> <p>3. 주6)의 해역</p>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7)의 해역
	조업금지	연중	<p>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주15)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외측해역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전갱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와 같은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고등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도 3 참조).</p> <p>2. 주15)의 해역</p> <p>3. 주16)의 해역</p>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근해채낚기어업	조업금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육지로부터 5천5백미터 이내의 해역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육지로부터 2천7백미터 이내의 해역
라. 근해자망어업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8)의 해역
	살오징어포획금지	연중	동해 전 해역과 동경 128도30분선 기준 동쪽의 남해 해역. 다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해 전 해역과 동경 129도선 기준 동쪽의 남해 해역으로 한다.
	뺨침대를 붙인 자망 사용금지	연중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중 주17) 바깥 쪽 해역과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
	뺨침대를 붙인 자망에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중 주17) 바깥 쪽 해역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라남도 해역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		

			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전라남도 해역에서 뺨침대를 붙인 어구에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근해안강망어업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2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바. 근해자리돔들망어업	멸치포획금지	연중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9)의 해역을 제외한 주7)의 해역
사. 1)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10)의 해역
	대게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연중		주11)의 해역
2) 근해문어단지어업	조업금지	연중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주위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구역 이내의 해역
아. 기선권현망어업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7)의 해역
	기선권현망 사용금지	연중 21시 30분부터 다음날 04시 30분까지		주7)의 해역
자. 근해형망어업	형망 사용금지. 다만, 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패류양식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어선에 의해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한다.		
	차. 모든 근해어업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 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새우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 주12)의 해역 2. 주13)의 해역 3. 주14)의 해역
2.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조업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연안선망어업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충청남도 연안선망에 한정한다)	연중	충청남도 태안군 육지로부터 5.5킬로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천수만 내측외의 수역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외한다.
		불빛 이용 금지	연중	1. 주2)의 해역 2.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	

		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3)의 해역
	멸치포획금지	연중	1. 주5)의 해역 2.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7)의 해역
다. 연안통발어업	게를 포획할 목적의 통발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10)의 해역
	대게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연중	주11)의 해역
라. 연안조망어업	조업금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마. 연안선인망어업	조업금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바. 연안자망어업	뺨침대를 붙인 자망 사용금지	연중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전라남도 해역에서 뺨침대를 붙인 어구에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8)의 해역
사. 연안들망어업	멸치포획금지	연중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9)의 해역을 제외한 주7)의 해역
아. 모든 연안어업	새우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 주12)의 해역 2. 주13)의 해역 3. 주14)의 해역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3. 구획어업	가. 장망류어업(장망을 사용하는 어업은 제외한다)	조업금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해선망어업	조업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새우조망어업	새우조망으로 새우포획을 허용한 경우 외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미리 협의를 거쳐 10개월 이내의 조업기간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 연안해역

		을 별도로 설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립수산물과학원과 미리 협의를 거쳐 10개월 이내의 조업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라남도 여수시·장흥군·강진군·고흥군·완도군·진도군·해남군 연안해역
라. 패류형망어업	형망 사용금지. 다만, 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패류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어선에 의해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 모든 어업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새우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 주12)의 해역 2. 주13)의 해역 3. 주14)의 해역

주1)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별도 1 참조)

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에서 정남 7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북청면 마양도등대 남동 15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영흥군 호도면 성황치단에서 동 10도 북 24해리의 수계를 거쳐 성황치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로 한정한다)

나. 강원도 통천군 난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수계,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 정동 3해리의 수계, 고성군 거진단 정동 4해리의 수계, 속초시 대포동 웅진단 정동 3해리의 수계, 양양군 기사문단 정동 4해리 반의 수계, 강릉시 정동진단 정동 4

해리의 수계, 경상북도 울진군 용추갑 정동 10해리의 수계를 거쳐 울진군 화모말 정동 1해리의 수계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12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다.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에서 같은 장소 서 10도 남 13해리의 수계와 황해도 송화군 속도 서쪽 끝 서 10도 북 13해리 반의 수계를 거쳐 속도 서쪽 끝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5월로 한정한다)

주2) 북위38도00분09.86초 동경125도49분52.80초, 북위34도00분11.50초 동경125도49분52.90초, 북위34도00분11.54초 동경127도59분52.23초, 북위34도30분11.34초 동경127도59분52.21초, 북위34도30분11.36초 동경128도59분51.90초,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이 만나는 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 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 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이북에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 이남까지의 해역 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동쪽 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 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대진말에서 정동 1만4천8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축산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7천4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 끝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7천4백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밖의 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3)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라도 소룡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남쪽 끝 등대 160도 5천미터의 점과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4)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참조)

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만갑 동쪽 끝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갑 서북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동북쪽 끝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동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신명리)과 그 지점에서 10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 11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등대 137도 2천미터의 점,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암각 90도 4천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동부면 갈곶 서양말 16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동부면 대병대도 남쪽 끝,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한산면 비진도 남쪽 끝 180도 1천미터의 점, 통영시 산양읍 외부지도 남쪽 끝, 통영시 산양읍 주도 남쪽 끝,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북쪽 끝,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천리 최남돌단 180도 2천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돌산읍 소리도 최남돌각(소리도 등대) 22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추서도 최남단, 완도군 청산면 상도 남쪽 끝, 완도군 소안면 소진리 동남쪽 끝에서 180도 4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 완도군 노화면 보죽리 보죽각, 노화면 죽굴도 남쪽 끝,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동북쪽 끝(등대)과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세포 서쪽 끝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라.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서 북쪽 끝과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외주광서돌단의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마.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쪽 끝 29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송말 277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등굴서 끝 22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가랭이 끝 8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북쪽 끝각 5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쪽 끝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국화리 북쪽 끝 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청산면 국산리 동북쪽 끝 5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동촌리 향도 9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동촌리 향도 매봉산 동남돌각 13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당탁리 최남돌각 22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당탁리 장도 서쪽 끝 30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국화리 북쪽 끝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사.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황간도 북쪽 끝 돌각 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청벽각 90도 2천미터의 점, 소안면 소안도 서쪽 끝 돌각 9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남쪽 끝 돌각 125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 18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노화면 보길도 보죽각 220도 2천미터의 점, 노화면 마삭도 북쪽 끝 돌각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직구도 남쪽 끝에서 추자면 흑검도 동남각, 추자면 하추자도 동쪽 끝 돌각 90도 2천미터의 점, 추자면 청도 동북돌각 직구도 남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5)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면 안도, 남면 연도 및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의 주위 550미터 이내의 해역

주6)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동남쪽 돌출부 끝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 미돌말을 연결하는 선, 가덕도 동두말과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 돌출부 끝을 연결한 선과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견유마을 동쪽 끝 및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견내량마을 선착장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7) 주6)의 해역을 제외한 경상남도의 해역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해역

주8)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참조)

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만갑 동쪽 끝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갑 서북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동북쪽 끝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동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신명리)과 그 지점에서 10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 11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3천미터의 점, 영도구 영도 등대 160도

3천미터의 점, 사하구 목도 남쪽 끝,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양지 암자 90도 4천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서량말 16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남쪽 끝, 통영시 한산면 가도 남단, 한산면 비진도 남쪽 끝 180도 1천미터의 점, 통영시 산양읍 외부지도 남쪽 끝, 산양읍 추도 남쪽 끝, 통영시 옥지면 두미도 북쪽 끝,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천리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면 돌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배다서 동쪽 끝 90도 3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룻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죽암각 25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금오도 월포 남쪽 끝 23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서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고흥군 점안면 남열리 중지미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 쌍충사돌각, 장흥군 대덕면 노력도 남쪽 끝,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 한박금 끝 90도 1천5백미터의 점,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 한박금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마.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남쪽 끝 돌단과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끝을 연결한 선, 완도군 신지면 산동 남쪽 끝 돌각과 완도군 완도읍 대두 끝을 연결한 선 및 완도군 군외면 원동 남쪽 끝과 완도군 군외면 달도리 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바.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단 290도 2천5백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송말 277도 3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굴서 끝 22.5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등대 끝 160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매랭이 끝 85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북쪽 끝각 50도 2천5백미터의 점 및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쪽 끝 0도 1천5백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9)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웅남 마을 서쪽 끝, 여수시 웅천동 두력도 남쪽 끝,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 북쪽 끝,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안정마을 동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의 동도리 북쪽 끝과 서도리 북쪽 끝을 연결한 선과 서도리 남쪽 끝 동도리 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0)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단과 그 지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동쪽 끝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1)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2 참조)

- 가.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21분52초
- 나.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45분12초
- 다. 북위37도06분12초 동경129도45분12초
- 라. 북위36도41분27초 동경129도51분24초
- 마. 북위36도28분18초 동경129도53분 08초
- 바. 북위36도19분30초 동경129도51분06초
- 사. 북위36도11분13초 동경129도48분48초
- 아. 북위36도06분57초 동경129도45분44초
- 자. 북위35도58분46초 동경129도44분 01초
- 차. 북위35도55분37초 동경129도43분14초
- 카. 북위35도49분04초 동경129도44분27초
- 타. 북위35도46분01초 동경129도46분21초
- 파.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30도00분15초
- 하.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29도26분52초

주12)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읍 대운두도 남쪽 끝과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내 백일도 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3)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북쪽 용동 끝과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과 보성군 회천면의 면 경계를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주14)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편리 가음도 북쪽 끝,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북쪽 끝,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남쪽 끝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흑어도 북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가. 북위33도24분40초 동경126도12분15초
- 나. 북위33도25분09초 동경126도12분23초
- 다. 북위33도25분37초 동경 126도13분00초
- 라. 북위33도25분38초 동경126도13분47초
- 마. 북위33도10분23초 동경126도15분27초
- 바. 북위33도09분36초 동경126도15분18초
- 사. 북위33도09분05초 동경126도16분17초
- 아. 북위33도09분38초 동경126도16분50초
- 자. 북위33도09분45초 동경126도17분24초
- 차. 북위33도10분18초 동경126도17분49초
- 카. 북위33도31분17초 동경126도56분09초
- 타. 북위33도31분50초 동경126도57분18초
- 파. 북위33도30분55초 동경126도58분35초
- 하. 북위33도29분53초 동경126도58분53초
- 거. 북위33도28분59초 동경126도57분47초

주1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4를 참조)

- 가. 북위37도36분00초 동경126도12분20초
- 나.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 다. 북위37도20분00초 동경126도23분30초
- 라. 북위37도12분20초 동경126도23분30초
- 마. 북위37도10분05초 동경126도30분00초
- 바. 북위37도07분15초 동경126도30분00초
- 사.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 아. 북위36도55분00초 동경126도06분30초
- 자. 북위36도48분00초 동경126도03분50초
- 차. 북위36도41분10초 동경126도05분35초
- 카. 북위36도38분00초 동경126도05분30초
- 타. 북위36도33분30초 동경126도14분30초
- 파. 북위36도19분20초 동경126도19분50초
- 하. 북위36도18분05초 동경126도26분50초

거. 북위35도51분00초 동경126도28분00초  
너. 북위35도49분40초 동경126도21분30초  
더. 북위35도48분10초 동경126도21분50초  
러. 북위35도47분10초 동경126도25분00초  
머. 북위35도39분20초 동경126도24분20초  
버. 북위35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50초  
서. 북위35도16분20초 동경126도15분00초  
어. 북위35도12분50초 동경126도10분0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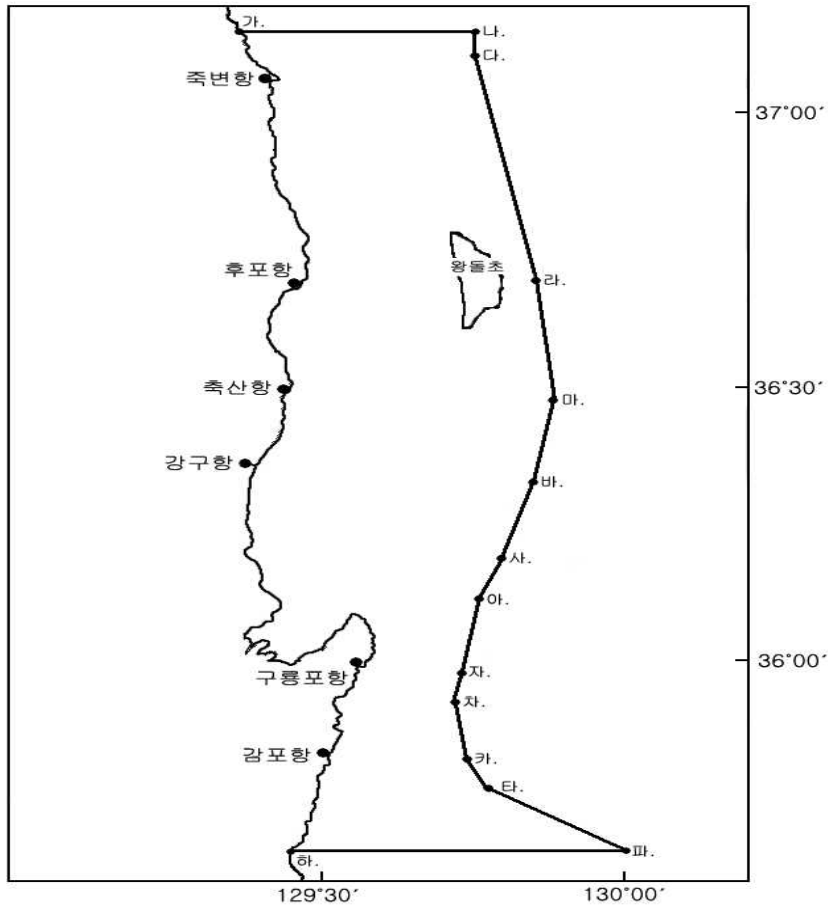
주1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5를 참조)

가.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00분00초  
나. 북위37도31분20초 동경126도03분02초  
다.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03분02초  
라.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16분21초  
마.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바. 북위37도19분38초 동경126도13분22초  
사. 북위37도18분15초 동경126도03분55초  
아. 북위37도09분40초 동경126도04분25초  
자. 북위37도06분50초 동경126도07분45초  
카.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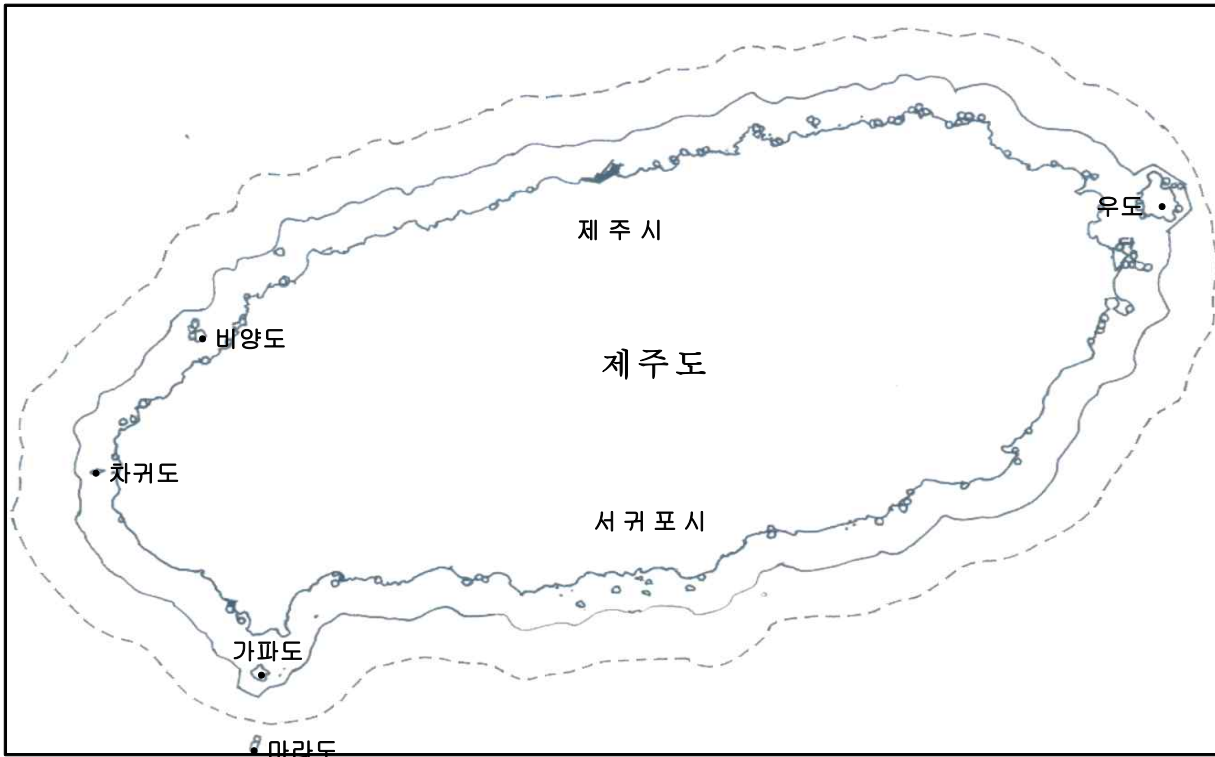
[부도 2] <개정 2020. 4. 14.>

근해장어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 · 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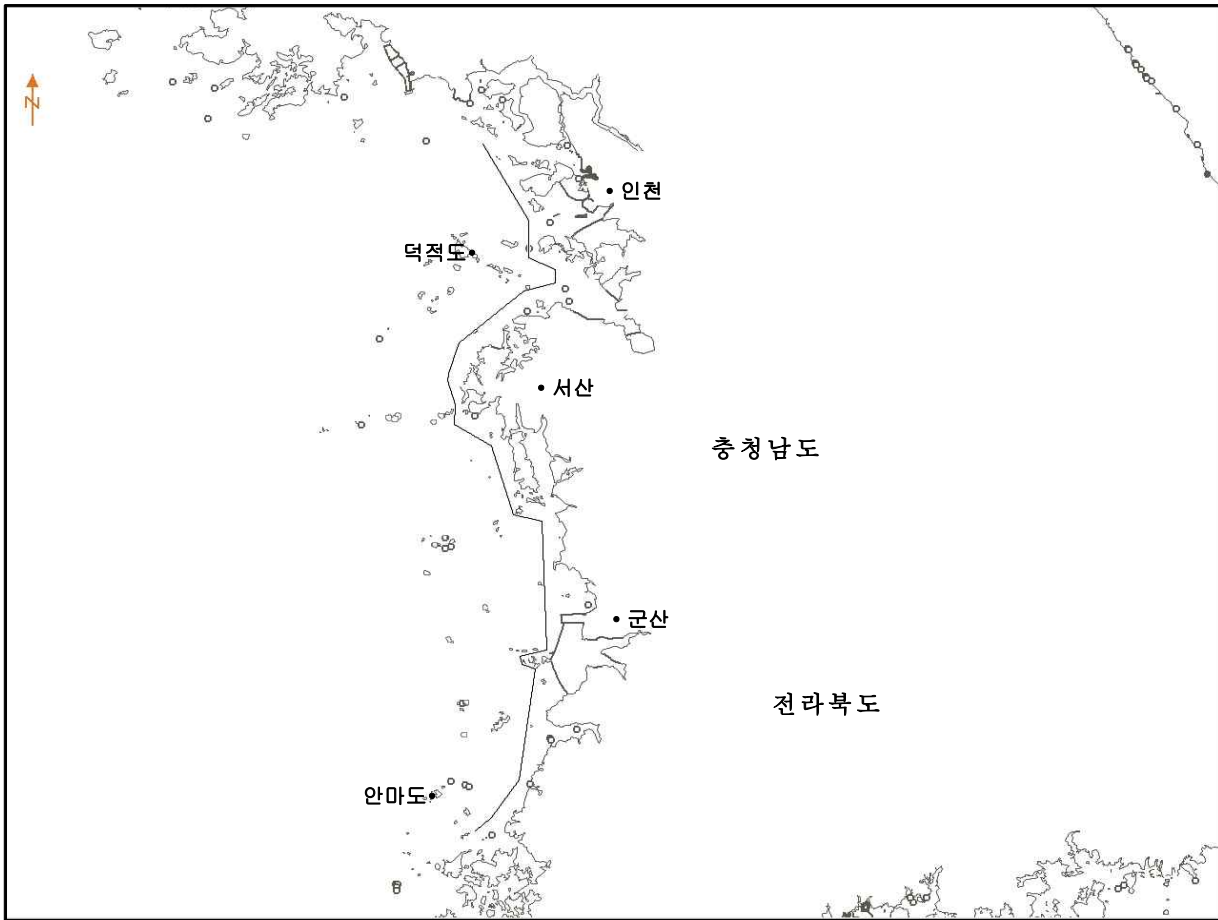


[부도 3] <신설 2014.3.24>

구 분	범 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2천7백미터 이내 및 주15)의 해역	_____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 해역	_____



[부도 4] <신설 2014.3.24>



[부도 5] <신설 2014.3.24>

